
2025년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통합 공모안내서]

2025. 3.

1. 추진배경

- 데이터센터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 ‘AI 일상화 시대’에 초고성능 컴퓨팅자원의 활용과 방대한 데이터의 효율적 처리를 가능케 하는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급속히 성장 중
 - *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382조원('22년)에서 800조원('32년) 규모로 2배 이상 성장 전망(spherical insights, '23)
 - AI 혁신 가속화, AI 주도권 확보 등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며, 데이터센터는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
 - － 해외 주요국은 AWS, MS 등 빅테크와의 전략적 협력 등 다양한 정책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유치·구축을 확대
 - ※ 트럼프 2기 정부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규모를 향후 4년간 5000억달러(약 720조원)로 대폭 확대하여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25.1월)
-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은 아직 부족
 -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이 예상되나,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활용되는 장비·SW 등은 외산 의존도가 높아, 국내 성장으로 직결되지 못하는 상황
 - ※ '22년 5조원에서 '32년 10.5조원 규모로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spherical insights, '23)
 - ※ 국산 장비 활용 추정 : 서버 11.1% 스토리지 6.7% 배터리 44% 발전기 0% UPS 8% 등 (KDCC)
 - － 또한, 데이터센터는 AI 활용 시 소비되는 에너지 대량 이용 등 전력 다소비시설로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등에 대한 대응 요구 증대
 -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법·제도가 다양하여 산업계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요국 대비 인센티브 등 혜택은 부족
 - * (미국) 일정 이상 투자·고용 시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 (아일랜드)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일본) 비수도권 건설시 재산세 25% 감면, 도쿄 이외 지역은 정보통신기구의 보조금 교부 등
 - 지자체별로 데이터센터 유치 노력중이나(신규 DC집적단지 개발, 산단 활용, 친환경 연계 등) 인력 수급, 수요기업 유치, 제반 인프라 등 한계 존재
 - * (비수도권 유치 애로사항) 데이터센터 운영인력 등 인력수급(32%), 수요기업 유치(32%), 전기 등 관련 인프라(22%) 등('22년 실태조사, KDCC)

2. 공모 개요

□ 추진 목적

-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 장비·SW 개발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홍보·인식개선 등을 통한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 지원
- 비수도권 인력양성,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컨설팅, 친환경 기술 실증 등을 통한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대응, 지방분산 활성화 기반 조성

□ 주요 내용

-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조성 지원
 - 국산 데이터센터 장비·SW를 실제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시험·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장비·SW 실증 연계 지원
- 데이터센터 장비·SW 개발·실증 ※ 5월 중 별도 공모 예정
 - (국산 장비·SW 개발 실증) 데이터센터의 기술 자립도 향상 및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장비 및 SW의 성능 향상, AI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한 고도화 및 실증을 지원
 - (친환경·고효율 장비·SW 실증) 전력 사용량 절감, PUE 향상 등 데이터센터의 친환경·고효율 전환을 위한 국산 장비·SW의 실증 지원
- 데이터센터 장비·SW 해외 진출 지원
 - 데이터센터 장비·SW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고도화, 상호운용성 검증(인증 포함), 컨설팅, 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
-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에 대응하여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효율적인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위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고도화 및 상시 컨설팅 지원
- (홍보, 인식개선 등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식 제고, 홍보 활동,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발굴 등 지원

□ 주요 지원내용

분 야		과제당 예산	지원 과제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① 테스트베드 조성 지원		5억~25.33억	2개 이상	▶ (지원내용) 데이터센터 국산 장비·SW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장비·SW 실증 연계 지원 ▶ (지원대상)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기관, 협단체 등 * 대기업은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은 미지원
장비·SW 기업 육성 (개발·실증) * 5월 중 별도 공모	국산 장비·SW 개발 실증 지원	최대 4.5억	6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센터 국산 장비·SW 개발 고도화 및 개발실증 지원 ▶ (지원대상) 테스트베드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센터 국산 장비 및 SW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별도 공모 시 확인 가능
	친환경·고효율 장비·SW 실증 지원	최대 4억	4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친환경·고효율 데이터센터의 전환 유인을 위한 데이터센터 장비·SW의 친환경 기술 도입·실증 지원 ▶ (지원대상)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 및 SW 제품의 친환경 기술 도입·고도화 및 실증이 필요한 중소·중견 기업 ※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별도 공모 시 확인 가능
② 해외진출 지원		최대 4.8억	2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국내 데이터센터 장비·SW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개발 고도화,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 (지원대상) 데이터센터 장비·SW 기업과 전문적인 컨설팅·마케팅이 가능한 기업·기관 간 컨소시엄
③ 비수도권 전문인력 양성		최대 2억	3개 지역	▶ (지원내용)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관련 구축·운영 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지원 ▶ (지원대상)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소재 전문 교육 기관·기업, ICT 진흥기관, 대학교, 협단체 등 ※ 국내 ICT 및 데이터센터 관련 교육기관, 기업, 대학교, 협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④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최대 3.3억	1개 운영사	▶ (지원내용) 데이터센터 도입·구축·운영 가이드라인 고도화 및 데이터센터 상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 (지원대상) 컨설팅, 조사연구 기업·기관·협단체 등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⑥ 홍보, 인식개선 등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운영기관)	최대 3억원	1개 과제	▶ (지원내용) 데이터센터 인식개선 활동, 협의체 운영(의견수렴, 정책발굴 등) 등 지원 ▶ (지원대상) 정책발굴 등을 위한 협의체, 인식개선을 위한 세미나·홍보 등 운영 등이 가능한 기업·기관·협단체 등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및 예산

○ (지원기간) 과제별 상이 (각 과제별 세부 내용 참고)

○ (지원규모) 과제당 지원금은 분야별 공모안내 참고

- 지원예산은 협약체결 후 전체 출연금의 70%, 중간점검 등 과제 점검 후 30%로 2회에 나누어 지급 예정
- 사업비는 규정 및 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편성
 - ※ 해당 과제는 R&D가 아닌 비R&D로, 간접비/연구수당 산정 불가하며 기술료 미징수
 - ※ 협약 사업비는 과제 심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조정 및 확정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기준 >

1.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해당 수행기업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내	7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2.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 부담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필요시 부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4.04.30)」 [별표1] 준용

3. 공모 분야별 세부 안내 및 제안요청 사항

1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조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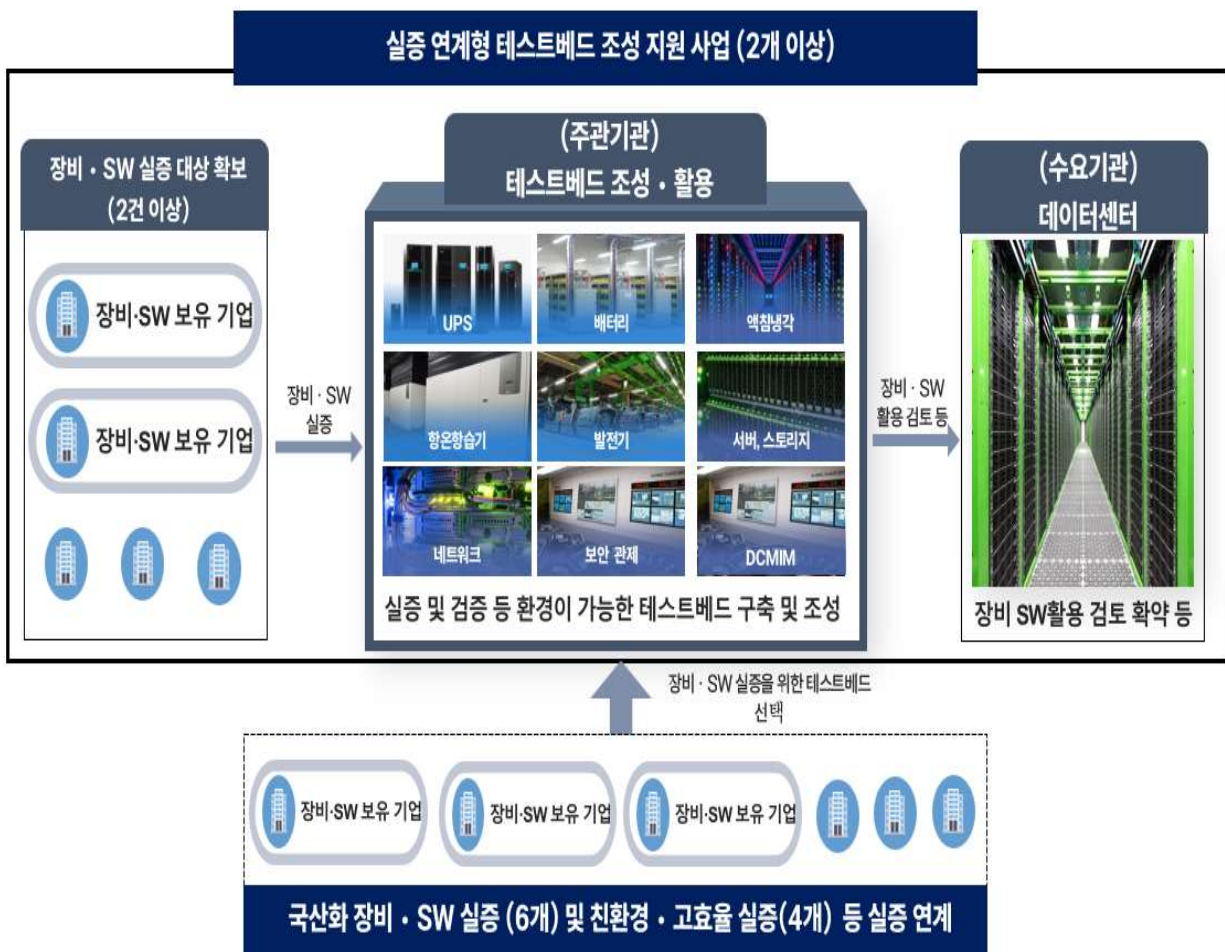
□ 지원 방향

- 실제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국산 데이터센터 장비·SW를 시험·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및 장비·SW 실증 연계 지원

- (성과목표)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을 통해 국내 장비·SW 자체 확보하여 2건 이상 실증 추진, 데이터센터 장비·SW 개발·실증* 사업 과제와도 1건 이상 연계하여 실증 지원

* (국산장비/친환경.고효율 장비·SW 실증) 5월 중 별도 공모 예정

<테스트베드 조성 지원 사업 체계>



□ 지원 사항

○ (지원대상)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기업, 기관, 협단체 등

※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또는 보유중인 기업, 데이터센터 운영사, 학교, 협단체, 과기정통부 지정 SW 산업 진흥기관 등

※ 대기업은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 또는 수요기관으로 참여할 수는 있으나 예산 지원은 불가

－ (주관 및 참여기관)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장비·SW를 시험·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기업, 기관, 협단체 등

－ (수요기관) 실증되는 장비·SW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기관으로, 데이터센터 운영기관·기업(수요처)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실증 장비·SW의 활용·도입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로 참여 가능

○ (지원분야) 자유 공모 (국내 데이터센터 장비·SW의 테스트가 가능한 분야)

< 테스트베드 분야(예시) >

구분	테스트베드 가능 분야(예시)	
Computing Spa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Supporting Infra	전력공급	PDU, UPS, 배터리, 발전기, 수배전설비, STS 등
	냉각	냉각탑, 냉동기, 실내기, 고효율펌프, 항온항습 등
Operation Space	보안 및 방재, DCIM(DatCenter Infra Mgt) 등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최대 '27년 12월

* 연차별 평가 결과 및 정부 예산 반영 상황 등에 따라 지원 기간 변동 가능

○ (지원규모) '25년 총 50.65억원 내외

※ 과제당 최소 5억원 ~ 최대 25.33억원 내외 지원, 2개 이상 과제 지원 예정

- (지원내용) 데이터센터 관련 국산 장비·SW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실증환경 운영 및 장비·SW 실증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구분	'25년	'26년(안)*	'27년(안)*
테스트 베드 구성·활용	▶ 테스트베드 구축 및 장비 시험·검증 등 500백만원~2,532 백만원 지원	▶ 테스트베드 고도화 및 장비 시험·검증 등 250백만원~1,000 백만원 지원	▶ 테스트베드 고도화 및 장비 시험·검증 등 250백만원~1,000 백만원 지원

* '25년 이후 지원 기간, 내용 및 지원 규모 등은 연차별 평가 결과, 정부 예산 반영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 요청 사항

- (테스트베드 조성 방안)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위치 및 형태 정의(상면임대형, 고도화형, 컨테이너형 등), 기존 인프라 활용 또는 신규 구축(부지 및 전력 확보 방안 등) 방안 등 테스트베드 구축 세부계획 제시

※ (권고사항) 테스트베드의 조기 구축이나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기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조성 관련 세부 계획 제안

- 제안하는 테스트베드에서 실증 가능한 데이터센터 장비·SW 제품군을 2개 품목* 이상 제안 권고 및 이를 고려한 구체적 설계 방안 등 제시

* (예시) UPS·배터리 등 전력공급 실증 테스트베드, 항온항습·냉동기 등 냉각 실증 테스트베드, 친환경 서버,액침냉각 등 친환경 실증 테스트베드 등

-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장비, SW, 인프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계를 포함한 세부 구축 방안 및 구축 일정 등을 제시

- 전산장비, 전력·통신 인프라 구축 등 전담 조직·인력 운영 방안 제시

-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조성되는 테스트베드에서 실증할 장비·SW 2건 이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구체적인 실증 방안 등 제안

* 테스트베드에서 실증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장비·SW기업 2개 이상을 필수로 사업에 참여하여 실증하되, 본 사업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도 가능(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향후 공모로 선정되는 데이터센터 장비·SW 개발·실증* 사업 과제와도 1건 이상 연계하여 해당 테스트베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실증 건수 추후 확정)

* 테스트베드 선정과 5월 공고 예정인 국산화 장비·SW 및 친환경·고효율 실증 지원 사업 과제와의 매칭 등을 통해 실증 대상 과제를 확정하여 통보 예정

- (테스트베드 활용·확산) 향후 5년간 단계별 테스트베드 조성·활용 방안(국산 장비·SW 실증계획 등), 실증된 장비·SW의 수요처 활용·수급 방안, 테스트베드의 수익화 등 정부 지원 후 활용 방안* 등을 제시

* (예시) 정부 재정지원 종료 후 활용 계획, 정부 재정 지원 조기 종료 시 대응 및 활용 방안 등

- (성과확산 활동 참여) 필요시 전담 기관의 관련 성과제고 행사 및 협의체 추진·참여 등 적극 지원 방안 마련

□ 평가 기준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테스트베드 조성 준비도, 테스트베드 조성 방안의 적절성, 지속 활용 방안의 적절성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

< 테스트베드 조성 지원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추진 목적 및 방향, 사업 목표 및 추진내용 간 부합성 - 사업의 방향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수행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성 및 사업기간내 실현 가능여부	10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 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제시된 성과 목표를 포함한 사업 성과 목표 제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기술 경쟁력 (40)	테스트베드 조성 준비도	○ 테스트베드 조성 의지, 준비 현황, 조기 구축 가능 방안 등 조성 관련 세부 계획의 적절성 ○ 테스트베드 형태 및 분야의 적절성, 인프라 확보 등 사업 기간내 조성 및 실증 연계 방안의 구체성	20
	테스트베드 조성 방안의 적절성	○ 장비·SW실증 연계를 고려한 테스트베드 추진 방안의 적절성 - 실증 및 적용 기술분야의 확장성을 고려한 테스트베드 구성 적절성 - 실증 연계를 고려한 테스트베드 조성 일정의 적절성 ○ 실증 분야의 명확성 등 실증 장비·SW와의 연계 실현 적절성 - 장비·SW의 실증 분야의 구체성 및 실행 방안의 구체성·적절성	20
사업 경쟁력 (25)	기술성 및 확장 방안의 적절성	○ 해당 테스트베드 분야의 장비·SW 시장성, 기술성 등 산업 영향력 ○ 테스트베드 적용 분야의 확장성 및 성장 가능성 등	10
	지속 활용 방안의 적절성	○ 시장 및 산업 수요, 실증된 장비·SW의 수요처 활용·수급 가능성, 자체 실증수요 확보 및 수요처 확대 방안 등 테스트베드 활용 가능성 ○ 향후 5개년 테스트베드 활용 방안의 적절성 및 수익화 역량 ※ 정부 재정지원 조기 종료 시 테스트베드 활용 방안 포함 등	15
사업 관리 (15)	사업관리	○ 수행기관 및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등 조직 수행능력 적정성 ○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5
	사업비 구성	○ 사업 수행 내용과 예산편성의 적합성 ○ 예산 집행 세부 계획의 적정성 및 투명성 - 지방바민간부담 매칭 비율, 바세목 구성내역 등 과제비 산정의 적정성	10
합 계			100

2

데이터센터 장비·SW 해외 진출 지원

□ 지원 방향

- 글로벌 수요가 높고, 기술경쟁력이 기대되는 국산 장비·SW의 해외진출을 위한 개발 고도화, 상호운용성 검증(인증 포함),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지원

- (성과목표) 데이터센터 장비·SW(AI 등 新ICT적용)의 글로벌 사업화 추진 실적*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건수, 수출 실적 등 글로벌 사업화 추진 실적 등

□ 지원 사항

- (지원대상)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장비·SW 기업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마케팅이 가능한 기업·기관 간 컨소시엄

- (주관기관) 데이터센터에 적용·활용 가능한 장비·SW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공고일 기준 국내 법인설립 완료 기업)

- (참여기관) 데이터센터 장비·SW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마케팅이 가능한 기업 및 기관

※ 주관기관 외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데이터센터 장비·SW기업, 국내 장비·SW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운영사 등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기업은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 미지원

※ 장비·SW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지원기관(주관·참여기관 포함)은 중복하여 지원 불가

- 데이터센터 장비·SW기업과 컨설팅·마케팅 기관·기업이 컨소시엄을 반드시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내 2개 이상의 장비·SW 기업의 참여를 권장

- (지원분야) 자유 공모(데이터센터 장비·SW 全 분야)+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5년 12월
- (지원규모) 총 9.6억원 내외 (2개 과제 내외 선정 및 과제당 최대 4.8억원 지원)
- (지원내용) 글로벌 진출이 유망한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SW의 개발 고도화, 상호운영성 검증(인증 등 포함), 해외 마케팅, 현지화, 홍보, 전시회 참가, 법률 자문 등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제안 요청 사항

- (해외 진출) 해외 타겟 시장 조사를 통한 목표시장 정의 및 진출 타당성 등 데이터센터 장비·SW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 방안 제시
 - (개발 고도화) 해외진출 국가 및 수요기업 등이 요구하는 장비·SW의 성능·기능·인증 등 분석, 해외진출을 위한 개발 고도화 방향, 개발 상세 내용 도출 및 추진 방안 등 제시
 - ※ 필요시 수요처 기반 해당 제품SW의 POC환경 구축 및 개발 등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현지화) 목표시장 환경(언어·문화 등) 및 특성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 등 세부내용이 포함된 현지화 전략 수립 및 현지 진출 관련 규제, 법령, 요구사항 수집 활동 등 세부내용 포함
 - (성능검증) 해외진출 적용 가능성 등 현지 기업·고객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현지 적합성, 사용성 등 검토 방안 제시 및 대상 장비·SW 제품 성능 및 검증을 위한 세부 방안 제시
- (컨설팅·마케팅) 해당 장비·SW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포함하여 제안
 - (컨설팅·홍보방안)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홍보·마케팅 추진전략 및 전시회·컨퍼런스 참여(부스 구성, 참여 횟수 등) 등 세부 추진 방안 제시
- (글로벌 사업화 방안) 해외 데이터센터 현장에 적합한 형태의 서비스 구상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해외 사업화 로드맵 및 계획 제시

- (성과확산 활동 참여) 필요시 전담 기관의 관련 성과제고 행사 및 협의체 추진·참여 등 적극 지원 방안 마련

□ 평가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해외진출 경쟁력 및 전략의 적절성, 시장성 및 사업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

< 해외 진출 지원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추진 목적 및 방향, 사업 목표 및 추진내용 간 부합성 - 사업의 방향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수행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성 및 사업기간내 실현 가능여부	10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 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기술 경쟁력 (40)	해외진출 경쟁력	○ 개발 기술 수준, 현황 및 가치 등 기술 우수성 ○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국내외 경쟁력, 차별성, 확장성 등	15
	해외진출 전략 적절성	○ 해당 장비·솔루션 해외진출 전략 계획 및 수행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센터 타겟 해외시장 내 진입 전략의 적정성, 경쟁력 우위 요소 등	25
사업 경쟁력 (30)	시장성	○ 해외진출 지원 이후 제품의 우수성 및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시장 분석을 통한 시장 진입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타겟 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적정성 등	10
	사업 발전 가능성	○ 해외 시장 수요, 기존 고객 보유력 등 사업 성공 및 발전 가능성 - 기존 매출, 고객군, 경쟁사 현황, 시장 점유율 등 성과 분석 ○ 글로벌 제품으로의 사업화 확대 가능성 - 신시장 진입 및 신규 수요처 발굴, 투자유치 가능성 등 제시	20
사업 관리 (10)	사업관리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 능력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재무안정성, 경영여건, 핵심역량,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5
	사업비 구성	○ 사업 수행 내용과 예산편성의 적합성 ○ 예산 집행 세부 계획의 적정성 및 투명성	5
합 계			100

3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지원 방향

-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에 대응하여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 (성과 목표)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 수료자 300명 이상(과제별 연 100명 이상) 배출

□ 지원 사항

- (지원대상)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소재 전문 교육기관 및 기업, ICT 진흥기관, 대학교 등 협단체

※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부산

－ (주관기관) 해당 지역에 소재한 민간 교육기관·기업, ICT 진흥기관, 대학교 등 비수도권 기업·기관·협단체 등으로 제한

※ (참여기관) 국내 ICT 및 데이터센터 관련 교육 기관 기업 대학교 협단체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6년 12월*(최대 2년)

* 연차별 평가 결과 및 정부 예산 반영 상황 등에 따라 지원 기간 변동 가능

- (지원규모) 총 600백만원(3개 지역 선정, 과제당 연 200백만원)

- (지원내용)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기획·개발, 교육과정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

□ 제안 요청 사항

- (교육과정 기획) 데이터센터 및 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기획 및 개발

- 해당 지역의 데이터센터 확산 현황 및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요가 높은 데이터센터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발
- 지역별 교육환경,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 기간, 수준별 교육 차수, 교육생 규모 등을 제시된 기준 내에서 유연하게 구성하여 제안
 - ※ 재직자, 취업희망자 등 실무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외부위원회)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교육시수 및 강사진, 교육 운영방안 등 교육 모델에 대해 산학연으로 구성된 외부위원회를 통해 점검·검증 수행
 - ※ 산학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운영위원회(가칭, 최소 5명 이상) 사업기간내 2회 이상 추진
- (교육운영·관리)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 (수요조사) 교육 운영기관으로 선정 이후, 해당 지역 데이터센터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방안 제시
 - (교육홍보) 데이터센터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및 교육생 모집을 위한 효율적인 대외 홍보방안에 대해서 제시
 - ※ 데이터센터 교육 인력확산 및 교육과정 홍보 등 필요시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 등 추진
 - (선발·관리) 교육과정별 최적화된 모집인원 확정, 교육생 선발기준 정립, 관련 기업 등과 연계를 통한 교육생 모집 유도 방안 등 제시
 - (전문강사 확보) 공공·민간 등 산학연 소분야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활용 및 적용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 있는 강사 발굴·확보
 - ※ 데이터센터 교육 분야 확정 및 확정된 분야별 전문 강사 Pool 확보 필요
 - 교육 강사와 교육생간 양방향 교육 운영을 통하여 교육 유연성 확보 및 교육 전달 효과 제고
 - * 교육생들의 질문을 사전 수집 후 교육 시간 중 토론 등

<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개요(안) >

구분	기초과정	전문과정
교육 대상	○ 비수도권 소재 재학·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취업 희망자 등 • IT/SW 분야 재직자, 개발자 등 • IT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 데이터센터 취업을 고려중인 일반인	○ 비수도권 소재 데이터센터 및 유관 직종에서 재직 중인 재직자 • 데이터센터 직종: 데이터센터 운영관리자, 데이터센터 시설관리자, 데이터센터 테크니션, 데이터센터 구축 등 • 유관 직종: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관리자, 시스템관리자, 서버운영엔지니어, 네트워크엔지니어, 인프라엔지니어, 공공 부문 정보시스템관리자 등
교육 목표	○ 20명 이상 양성	○ 80명 이상 양성
교육 시수	○ 45시간 내외 구성	○ 25시간 내외 구성
교육 내용 (안)	<예시> •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현황 • 데이터센터 시장 현황 및 전망 • 데이터센터 설비 및 인프라 • 데이터센터 운영 기초 기술	<예시> • 친환경 데이터센터 운용 •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법제도/표준 • 데이터센터 운영기술 고도화 • 데이터센터 사고 및 장애 대응
비고	○ 사업 제안시 제시된 교육과정은 수행기관 선정 이후, 교육과정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도록 함 ○ 외부위원회를 통한 교육과정 확정 후, 각 교육과정별 교재(교안)를 개발한 뒤에 교육과정을 진행하도록 함	

- (교육장소 운영) 재직자 등 교육생을 위한 교육 공간, 내부 세미나,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등 해당 지역에 최적화된 교육 수행을 위한 장소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해당 지역 교육생의 편의와 수혜 범위를 고려하고, 커리큘럼별 효율적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장비가 구축된 교육장 및 필요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협업 공간 조성
 - ※ 예산 및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데이터 센터 장비, SW 교육을 위한 실습 장비 등 제공 등
 - 재직자 교육과정의 교육 효율성을 위하여, 현장방문 교육, 온·오프라인 혼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고려하여 제시
 - ※ 교육과정 수요조사 시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함
- (교육 성과체계 마련) 교육생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및 환류 방안 제안
 - (성과관리) 교육과정 시작 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 관련 사전지식 평가 및 교육 후 평가를 통한 성과향상도 관리
 - (환류체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선방안, 교육과정에 추가를 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환류 체계 제안
 - ※ 교육 기간에 따라, 중간평가 진행 등 제안사가 효율적인 환류 계획 제시
 - 현재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수행기관의 관련 행사 및 협의체 추진·참여

□ 평가 기준

- 지역별 데이터센터 현황 및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 구성, 인력양성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사항을 평가

<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 방향 및 목적과 수행계획 목적 및 내용간 부합성 - 사업의 방향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수행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성 및 사업기간내 실현 가능여부	10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 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제시된 성과 목표를 포함한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기술 경쟁력 (40)	데이터센터 이해도	○ 지역 내 데이터센터의 현황에 대한 이해도 ○ 데이터센터 교육 수립 기술 이해도 ○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적정성	10
	운영 역량	○ 데이터센터 산업 및 해당 지역 환경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 기획 방안의 적정성 - 교육과정 수요조사 방안의 적절성 및 교육과정 반영 방안 -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에 필수적인 교육내용이 포함여부 - 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배정의 적절성 ○ 데이터센터 교육 시설·장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의 적정성 ○ 전문성 있는 강사 보유 및 확보 방안, 교육생 모집·선발·관리 방안의 적정성 - 교육생 모집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20
	환경 구축	○ 교육장소 및 교육장비의 확보방안, 안전 환경 등의 적정성 ○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사업 경쟁력 (30)	조직 역량	○ 수행기관 및 과제책임자, 참여인력의 사업수행능력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 사업수행 관련 조직 및 인원의 적절성	15
	성과 관리	○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지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 교육생의 성과관리등 사업관리 방안 ○ 교육 환류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5
사업 관리 (10)	사업관리	○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 지역 인프라, 지역간 사업 연계 협업 등에 대한 기여도	5
	사업비 구성	○ 사업 수행 내용과 예산편성의 적합성 ○ 예산 집행 세부 계획의 적절성 및 투명성	5
합 계			100

4 데이터센터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방향

-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개발·고도화, 상시 컨설팅 등 데이터센터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 － (성과목표) 지자체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 컨설팅 지원 (통합컨설팅 4건 이상, 원포인트컨설팅 지원),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가이드 개발·고도화 1건

< 컨설팅 지원 내용 성과 목표(안) >

통합컨설팅(안)	▶ 지자체 환경 특성에 맞는 데이터센터 추진 사업 기획(안) 컨설팅, 중소기업 데이터센터 활용 지원(전산실 통폐합 등) 컨설팅 등
원포인트 컨설팅(안)	▶ 데이터센터 구축 및 활용 등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컨설팅 등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가이드 개발(안)	▶ 지자체별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관련 관계법령, 조례분석 등을 통해 광역 지자체별 인허가 프로세스(매뉴얼), 데이터센터 FAQ 포함 등

□ 지원 사항

- (운영기관 공모대상) ICT·SW 컨설팅 기업, 데이터센터 관련 컨설팅 기업, 기관, 협단체 등
 -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6년 12월*(2년)
 - * 연차별 평가 결과 및 정부 예산 반영 상황 등에 따라 지원 기간 변동 가능
- (지원규모) 최대 330백만원 (1개과제 지원)
- (지원내용)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통합컨설팅, 상시 컨설팅 지원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제안 요청 사항

-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모델 마련) 데이터센터 유치 및 계획 중인 지자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모델 제안
 - －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관련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 지원분야 개발 및 선정,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 개선방안 등 컨설팅 방법론 마련
 - － 컨설팅 운영 모델 및 방법론에 기반한 비수도권 컨설팅 지원센터 상시 컨설팅 서비스 프레임워크 구성
 - － 통합 컨설팅 및 원포인트 컨설팅 등 본 과제에서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방안 및 범위 제시
- (컨설팅 수요 모집) 지자체 관심도, 추진 현황, 전산실 클라우드 전환 등 컨설팅 수요가 높은 지자체 및 기업 모집을 위한 수요 방안 마련
 - － 상시 컨설팅 지원센터 활성화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기업 참여를 위한 온·오프라인 독려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비수도권 기업 등의 현황 및 환경을 고려한 컨설팅 수요 매칭 활동 수행

※ 기본 컨설팅 지원 사항(예시) : ① 컨설팅 지원 상담, ② 신청 내역의 적절성, ③ 수요 기반의 컨설팅 제공 범위 정의 ④ 컨설팅 보고서 제공 ⑤ 애로사항 대응 (상시)
- (컨설팅 지원 및 운영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컨설팅 범위, 기간, 적용방법론 등을 정의하고 지원 필요성, 타당성 등 성과확보를 고려한 컨설팅 추진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 － (지자체 컨설팅 지원) 데이터센터 구축 단계(유치완료, 계획완료, 준비 등)별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분야, 범위, 기간, 결과보고서 등 제공

※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 컨설팅 수요처 등이 협의하여 범위 등 확정

- － (기업 지원) 기존 전산실 데이터센터 이전 고려 기업, 데이터센터 기반 클라우드 전환 고려 기업 등 데이터 센터 활용 과정에 발생하는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컨설팅 제공

- ※ 제공 컨설팅 성과 환류 등을 위한 지원 대상의 사후 모니터링 방안 마련
- ※ 수요기업 필요성, 타당성 등 컨설팅 지원 적절성 확보 방안 마련
- ※ 비수도권 기업 지원 목표를 수립하여,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 마련
-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관리) 비수도권 대상 데이터센터 상시 컨설팅 지원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 특히, 지자체 및 비수도권 기업 등 수요자 애로사항 및 필요 사항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상시 의견수렴 채널 확보 방안 제시
 - ※ 2024년 상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및 단기(24~26년)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 제안
 - ※ 365일 x 24시 운영 등 비현실적이고 사업 성격과 무관한 콜센터 운영 방안 등의 제안은 지양
 - ※ 컨설팅 지원센터를 위한 별도 인프라(사무실 등) 구축은 지양하고 필요시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성과관리)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만족도 조사, 성과 목표치 관리 등 수행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성과 전파 활동 수행
 - ※ 필요시 성과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기사 배포
- (활용 가이드라인 고도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및 추진 계획시 필요 사항에* 대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고도화 및 보급
 - * (예시) 구축 시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제 분석, 입지조건, 전력수급 등 인프라 조성 방안, 투자유치 방안, 규모 및 구성 등 상세요건 설계,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방안 도출, 친환경 고효율 등을 위한 구축·운영지침 표준 매뉴얼 모델, 광역지자체별 조례 분석 등을 통한 데이터센터 인허가 프로세스 및 FAQ 마련 등
- 旣 가이드라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 등을 통해 수요자 기반 개발 가이드라인 고도화 방안 마련
 - ※ 기존 가이드라인은 제안 작업 필요시 전담기관에게 (NIPA) 요청하면 별도 제공
-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Q&A, FAQ 등 수요자 요구 및 필요사항 등을 모니터링·수집하여 가이드 고도화에 반영
 - ※ 가이드라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개발배포 등 다양한 방식의 배포 방안을 고려하여 제안하고 사업 기간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성과제고 활동) 현재 진행중인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확산을 위해 필요한 성과 확산 활동 제안

-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및 필요시 관련 행사 및 협의체 운영·관리 등 수행

□ 평가 기준

-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컨설팅 지원 수요 모집 및 맞춤형 컨설팅 수행 전략과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방안, 활용성 높은 가이드라인 고도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컨설팅 지원 센터 운영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20)	목적 부합성	• 사업 방향·목적과 과제 목적·내용간 부합성 - 사업 방향 및 목적의 이해도 - 과제 목적 및 내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	10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 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u>제시된 성과 목표를 포함한</u>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기술 경쟁력 (35)	컨설팅 지원 관리	•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모델 적정성 - 지자체 및 비수도권 기업 모집 방안 및 목표 제시 - 컨설팅 요건 도출 및 컨설팅 지원 분야 선정의 적정성 • 컨설팅 지원 및 운영관리 적정성 - 수요자 맞춤 컨설팅 수행 및 만족도 측정의 적정성	20
	가이드라인 개발	• 데이터센터 구축 가이드라인의 활용성 - 비수도권 데이터 센터 추진계획 및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성의 적정성 - 가이드라인 배포 및 활용성 제고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 경쟁력 (30)	컨설팅 전문성	• 컨설팅 방법론의 전문성 - 데이터센터 컨설팅 단계별 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의 유연성	15
	센터 운영 관리	○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지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 컨설팅 수요 및 모니터링 등 지원센터 운영 관리 방안 ○ 컨설팅지원센터 성과관리 구체성 및 적정성	15
사업 관리 능력 (15)	관리 적정성	• 추진 전략, 일정, 비용 산정, 정보 보안 등 관리 적정성 - 수행 전략 및 일정, 관리체계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민간부담비율, 바·세목 구성내역 등 비용 산정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10
	수행 능력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 능력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컨설팅 전문성 및 적정성 - 경영여건, 핵심역량,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5
합 계			100

5

홍보, 인식개선 등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운영기관)

□ **지원 방향**

- 협의체 운영 등 데이터센터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발굴 활동과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 (성과목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정책발굴(5건 이상) 및 국내 인식제고 등 홍보 활동 수행(3회 이상)

□ **지원 사항**

- (운영기관 공모대상) 정책 발굴 등 협의체 및 세미나·홍보 등 운영 가능 기업(기관), ICT·SW 등 컨설팅 기업, 기관, 협단체 등
 -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5년 12월
- (지원규모) 최대 300백만원 (1개과제 지원)
- (지원내용) 데이터센터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네트워크 활동 등을 위한 데이터센터 협의체 운영,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활동 등 추진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제안 요청 사항**

- (의견수렴·정책발굴 활동) 데이터센터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발굴 활동 추진
 - 국내 데이터센터 이해관계자들의 시장요구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의견수렴,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분석, 정책 수요 수렴, 국내외 산업 현황 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 * 전문가 협의 산학연 협의체 운영 등 수요발굴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안 제시

- 데이터센터 관련 산·학·연 등의 협력체계 확보를 통해 정책 수요 발굴 등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방안 마련, 추진 방안 제시
- (홍보 및 인식제고 활동) 데이터센터 관련 인식 제고,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 등 홍보 활동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 중요성 전파 및 他산업 대상 데이터센터 활용 및 산업 이해도 제고 활동 등 다양한 세미나·컨퍼런스 세부방안 제시
- *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홍보 및 인식제고 세부방안 제시

□ 평가 기준

-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효과적인 정책 발굴 및 인식 제고 활동 방안,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홍보, 인식개선 등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 방향 및 목적과 수행계획 목적 및 내용간 부합성 - 사업의 방향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수행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성 및 사업기간내 실현 가능여부	10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 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제시된 성과 목표를 포함한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기술 경쟁력 (55)	의견수렴 활동 적절성	○ 국내외 제도 및 지원 현황, 국내외 동향 등 조사분석 계획 구체성 ○ 정책수요 발굴, 전문가 및 협의체 활동 등 정책 발굴을 위한 활동 적절성 및 효과성 -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활동의 구체성 등	25
	홍보 및 인식제고 적절성	○ 데이터센터 국내 홍보 및 인식제고 전략방안의 우수성 - 홍보 및 인식제고 수행 방안의 적성성 ○ 홍보 및 인식제고 활동 후 성과 확보 방안 -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을 통한 지속적 공감 형성 방안의 적절성	30
사업 경쟁력 (15)	운영 관리 전문성	○ 정책개선 수요 및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및 산학연 전문가 활동 등 운영관리 우수성 ○ 홍보 및 인식제고 운영관리 구체성 및 적절성 - 효과적인 홍보 및 인식제고 활동 운영관리 방안 우수성 - 홍보 및 인식제고 활동 운영 세부 계획의 적절성, 전문성	15
사업 관리 (10)	사업관리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 능력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재무안정성, 경영여건, 핵심역량,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5
	사업비 구성	○ 사업 수행 내용과 예산편성의 적합성 ○ 예산 집행 세부 계획의 적정성 및 투명성	5
합 계			100

4. 사업 추진 체계 및 관리

□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 사업관리, 예산집행, 중간점검, 정산, 성과평가 등 수행
평가위원회	▶ 평가기준에 따른 과제 수행계획 심사 등 선정평가 ▶ 과제 주요 성과 등 최종 결과 평가
심의위원회	▶ 지원과제 대상 과제 수행계획 및 사업비 검토·조정 ▶ 과제 관리에 필요한 심의 등
기업/협단체, 기관, 대학교 등	▶ 비수도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컨설팅지원센터 운영, 친환경 고효율 장비·솔루션 실증, 국산화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해외진출 지원, 정책수요 발굴 등 수행 및 협력 ▶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및 성과관리 ▶ 산출물 및 보고,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광역지자체 및 지역 ICT 진흥기관	▶ 비수도권 전문인력양성, 지역 DC집적단지 활성화 수행 및 협력, 컨설팅 지원센터 수요 지원, 테스트베드 조성 등 ▶ 진행관리 및 현황·산출물(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 등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추진 일정

- (대상사업) 테스트베드 조성, 해외진출 지원, 비수도권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홍보·인식개선 등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추진절차	담당	주요내용	일정 (안)
사업 공고 및 접수	(NIPA)	· 사업 공고 (NIPA,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	3월 3주~4월 3주
▼			
과제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사전검토) 선정평가 준비, 적합성 검토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서면·발표평가	4월 3주~4월 4주
▼			
과제 심의·조정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4월 5주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수행기관)	· 최종 과제 선정 및 통보 · 심의·조정된 수행계획서 제출	~5월 1주
▼			
협약체결	(NIPA ↔ 수행기관)	· 과제 협약체결,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등	~5월 1주
▼			
사업비 지급	(NIPA)	· 사업비 지급 (수행기간 중 2~3회 분할지급)	-
▼			
과제 수행 및 지원	(NIPA ↔ 수행기관)	· 착수보고 · 수행기관별 과제수행, 협약변경 등	5월~12월
▼			
점검	(NIPA)	· 진도점검	9월~10월(예정)
▼			
과제 수행 종료	(수행기관 → NIPA)	· 과제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추진실적 등)	12월
▼			
결과 평가	(평가위원회)	· 수행결과 평가	'26년 1월
▼			
사업비 정산	(NIPA)	· 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환수	'26년 1~3월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대상사업) 국산화 및 친환경·고효율 장비·SW 개발 실증 지원 분야

추진절차	담당	주요내용	일정 (안)
사업 공고 및 접수	(NIPA)	· 사업 공고 (NIPA,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 · 테스트베드 선정 결과 및 실증 분야환경 등 공개 (NIPA 홈페이지 공지사항)	5월 2주~6월 2주
▼			
과제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사전검토) 선정평가 준비, 적합성 검토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서면·발표평가	6월 2주~6월 3주
▼			
과제 심의·조정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6월 4주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수행기관)	· 최종 과제 선정 및 통보 · 심의·조정된 수행계획서 제출	~6월 4주
▼			
협약체결	(NIPA ↔ 수행기관)	· 과제 협약체결,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등	~6월 4주
▼			
사업비 지급	(NIPA)	· 사업비 지급 (수행기간 중 2~3회 분할지급)	-
▼			
과제 수행 및 지원	(NIPA ↔ 수행기관)	· 착수보고 · 수행기관별 과제수행, 협약변경 등	6월~12월
▼			
점검	(NIPA)	· 진도점검	10월(예정)
▼			
과제 수행 종료	(수행기관 → NIPA)	· 과제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추진실적 등)	12월
▼			
결과 평가	(평가위원회)	· 수행결과 평가	'26년 1월
▼			
사업비 정산	(NIPA)	· 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환수	'26년 1~3월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과제 점검 및 평가

- (중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중간 산출물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 실시
 - 과제 수행계획서 대비 주요 지표 달성 여부, 사업 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을 중심으로 점검
 - * 수행기업은 중간보고서, 사업비 집행 실적 등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요청 기한 내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행 부진, 사업비 유용 등), 전담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 해약 등 기준 >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기금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협약 해약 사유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 조치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중

- (결과평가)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70~79점), 미흡(60~69점), 매우미흡(60점 미만)으로 평가
 - 평가결과 70점미만 과제의 경우 심의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 종료에 따른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 등은 12월 말까지 제출 협조 (상세 일정 및 평가 계획 과제 종료 전 별도 안내 예정)
 - 연차 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사업 중단 등 '25년 평가추진계획 등의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과제 종료에 따른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 등은 12월 말까지 제출 협조 (상세 일정 및 평가 계획 과제 종료 전 별도 안내 예정)

- (결과활용) 평가 결과는 추후 동 사업에 기 수행기업이 고도화 또는 타 과제로 지원할 시 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협조 사항

- (성과 조사) 사업(협약)기간 이후 5개년간 매출액, 성과 창출 효과 등 정기·비정기 성과활용 조사에 대한 제출 협조

- 수행기관은 사업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성과 홍보) 선정기업은 전담기관(NIPA) 요청 시 사업 성과를 홍보·확산할 수 있는 전시회·컨퍼런스 등 참석에 협조하여야 함

*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 등은 운영비 내 홍보비 항목에 편성하여 활용 가능

-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은 과제 종료 후('26.1~) 추진하며,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회계법인에 지급할 정해진 표준수수료 예산 편성 필요

< 총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비고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VAT 포함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 (일자리) 과제 신청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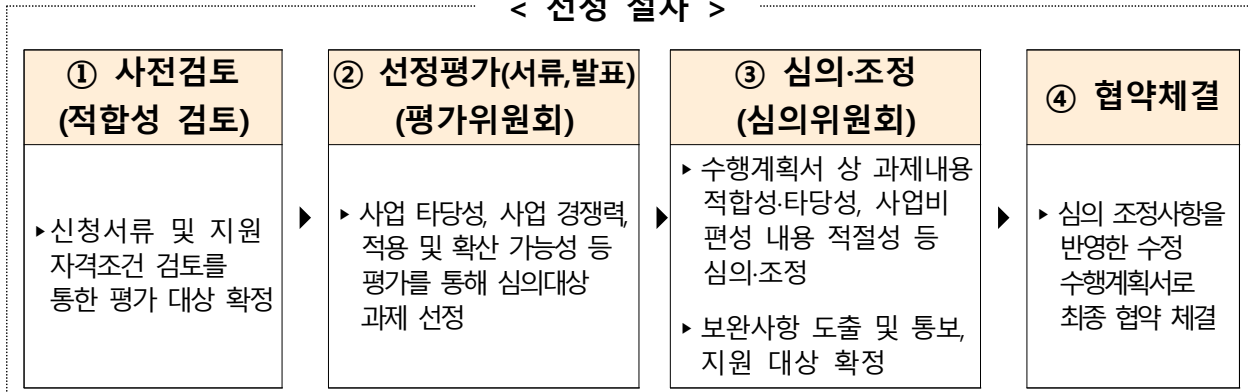
- 그 외 지원과제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대내외 협조 자료 요청시 성실히 이행

5.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신청서류 등의 적합성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계획 심의·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 절차 >



□ 단계별 평가 기준

○ (1단계) 사전 검토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항목) 신청자격·서류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 >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 사업수행기관, 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 과제수행계획서, 붙임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 사업수행기관 지원과제 및 수행계획 중복여부
참여 제한 여부	· 사업수행기관, 책임자 등의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 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부도, 전액자본잠식 등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	· 민간부담금 투입비율 준수 등 과제비 산정 적정 여부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조치) 검토 결과 부적정 시, 평가 대상 사전 지원제외 등 조치
 - * 신청 기업의 경우, 아래 신청 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검토하여 지원해야 하며, 향후 선정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평가 제외(사전 지원 제외) 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최종 협약이전 자본잠식을 해소해야 하며, 증빙 미제출 시 차순위 후보자를 선정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 (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적용

○ (2단계) 선정평가(서면·발표평가)

- (개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 과제 대상 선정
- (대상) 사전 검토(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방법) 서면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하며, 서면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발표평가 대상 과제 수(예정) : 지원과제별 3배수 선정) 진행
 - * 발표평가 대상과제는 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 이메일로 안내
 - * 신청과제 수가 발표평가 대상 수(3배수)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 진행
 - *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참석·발표 필수(오프라인 대면 평가) 참석(세부사항 추후 안내)

< 평가 점수 산출 기준 >

평가점수 산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통과기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
동점자 발생	•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 위의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 개최 가능

- (평가기준) 정책부합성, 기술경쟁력, 사업경쟁력, 사업 관리능력 등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각 평가항목은 부문별 세부내용의 평가항목 참조)

○ (3단계) 심의위원회 및 지원과제 확정

- (개요) 발표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고득점 순으로 지원우선순위 대상으로 과제 내용 심의
- (대상)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원우선순위 대상 과제
- (방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정
 - ※ 사전검토결과, 선정평가의견, 심의의견 등에 따른 과제내용·과제비 보완 가능 여부 협의 후 최종 확정(보완 불가 시, 차순위 과제를 지원과제로 확정)
 - ※ 지원우선순위로 선정된 과제의 예산 규모에 따라 잔여예산을 활용한 추가 과제 선정 가능
 - ※ 협약관련 제출서류 등 협약체결 관련내용은 선정된 기업대상 추후 안내 예정

6.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

□ 공고문 유의 사항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 및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인공지능 신뢰성 유의사항

- 선정 과제 중 아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AI 서비스 개발과제는 추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2024. TTA)” 내 체크리스트를 필수 제출해야 함
- 과제 수행기간 중 전문인증기관(TTA) 판단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전문인증기관(TTA)을 통한 AI 신뢰성 검인증을 수행해야 함

< AI 신뢰성 고위험군 정의 >

-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 마.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에 있어 생체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분석·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 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 사.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 자. 그 밖에 국민의 안전·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계획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 개인정보 활용 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 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이행·점검·조치 방안 포함)
 - **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이용·제공, 개인정보보관·파기
(상시점검) AI 서비스 관라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 윤리점검 이행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은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 관련 이력 제출 기업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수행기관 대상
- 선정과제의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는 관련 교육 이수* 및 협약 체결 시 이수증 제출
 - *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
- 선정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서를 지원과제 협약체결 전에 제출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지원과제 내용 검토, 진도 점검, 최종 평가 등 진행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요구,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상세내용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확인

□ 관련 규정

- 해당 과제는 과기정통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준용 및 동 규정의 하위 기준에 따름
 -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는 기업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협약서, 수행계획서, 예산 비·세목 등을 조정하여 협약하여야 함

구 분		시행일자	규정명
우선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2022.1.14.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2024.3.15.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2023.11.30.	기금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2-190호	2022.1.14.	기금사업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2-191호	2022.1.14.	기금사업점검계획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2024.10.24.	기금사업협약체결및사업비관리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7호	2024.03.15.	ICT예산정책협의체운영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2024.03.15	기금사업결과평가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2021.03.31.	기금사업수행상황및정산보고등에관한지침
일부 준용	대통령령 제33899호	2024.12.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대통령령 제34920호	2024.09.2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7. 사업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5. 3. 20(목)~ 4. 21(월) 16:00까지

○ (접수방법) NIPA 사업관리시스템(nxt.nip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절차 >

① 신청서류 적정여부 등 최종 확인

- 신청전에 신청서류 적정여부(필수서류 누락여부, 파일 열림 여부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 등 최종 확인
-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시 사전지원제외 조치 가능

② 사업관리시스템(nxt.nipa.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 NIPA 사업관리 메인 홈페이지(nxt.nipa.kr) > 로그인(신청과제 총괄책임자) > "과제관리" > 사업공고 메뉴 클릭
- 공고의 접수상태가 접수 중인지 확인 후 해당 공고 선택하여 접수
- ※ 세부내용은 붙임의 <사업관리시스템(nxt.nipa.kr) 과제신청 매뉴얼> 참조

※ 전산 접수 시 유의 사항

-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
- 접수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업로드 실수 등)로든 신청 불가
- 마감시한 내 과제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 과제접수 중 사용미숙, 시스템 접속 지연, 파일 업로드 실패 등으로 인해 정상 접수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1~2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이메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불가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처
(전화) 070-5151-8215 / 070-5151-8239
(메일) nxt_support@nipa.kr

□ 제출서류

구분		필수여부	작성양식	비고
2025년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과제수행계획서		○	신청양식 0	· 서명·날인한 표지페이지를 계획서 내 이미지로 삽입 · HWP와 PDF 제출
붙임 1	신청과제자기점검표	○	신청양식 1	· 서명·날인한 PDF 제출
붙임 2	기관(기관장)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양식 2	· 날인한 PDF 제출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양식 3	· 참여인력 전원이 서명한 PDF 제출
붙임 4	평가항목참조표	○	신청양식 4	· PDF로 제출
붙임 5	직접고용계획및효과표	○	신청양식 5	·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작성 · XLSX로 제출
붙임 6	유사과제검색결과서	○	예시참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 · NTIS>과제참여>유사과제>정보입력 (기준유사도는 '60', 검색기간 2020년 부터 2024년까지 설정) · 다운로드한 인증서(PDF) 제출
붙임 7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증명원)2025년 발행본(PDF) 제출
붙임 8	기업규모 구분 관련 증빙	○	-	· 기업별 관련 증빙제출 ·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붙임 9	표준재무제표증명('24년)	○	-	· 전년도 결산보고서가 없을 시, 전년도 (‘24년) 가정산서 및 최근년도(‘23년) 결산보고서 제출
붙임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모든 신청기관 제출
붙임 11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신청양식 6	· 모든 신청기관 제출
붙임 12	발표자료	○	자유양식	· PDF/PPT로 제출
붙임 13	기타증빙	X	자유양식	· 사업화 : 수요약서 등 · 일자리창출 : 세부계획서 등 · 그외 수행계획, 기업 기술력, 기 개발 솔루션 우수성 등 관련 해당증빙 · PDF·HWP·PPT 등으로 제출

[참고] 기업규모 관련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서류 작성 · 제출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신청서류 작성시	성과지표 목표치	○ 각 과제별 성과 목표에 포함된 수치 필수 성과지표로 반영 ○ 수행기간 내에 실현가능한 수치로 작성 - 수행계획서에 기재한 목표치는 이후 하향 조정 불가, 최종평가지 증빙 제출 - (외부시험·인증) KOLAS로부터 인정을 받은 외부 시험·인증 기관 이용 권장
	과제내용	○ 본 과제의 내용을 수행계획서 상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수행기간 내와 수행기간 전·후 수행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참여인력	○ 참여율, 참여기간 등 참여인력 관련내용은 실제 투입내용대로 기재 - 허위인력 기재, 참여율 초과 등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 ○ 참여인력은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권장
	사업비	○ 신청과제와 직접 관련성 있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 참고 (비·세목별사업비산정및불인정기준) 확인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처리 과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등 의무사항 준수 ○ 계획서 내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시 제출
신청서류 제출시		○ 필수 신청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가능 ○ 서류는 공모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공모마감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접수마감 시한(4.21(월) 16:00) 엄수 - 제출 후 상태값 확인 ("접수중" X, "접수완료" O) -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 불가, 접수 마감 1~2일 전 신청 완료 권장

※ 과제 협약체결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청렴이행각서, 총괄/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 보안교육 이수결과 등 제출 예정

8. 사업 문의 상담 운영 및 문의처

□ 사업 문의 상담

◎ 일정 : 2025년 3월 27일(목) ~ 4월 1일(화) 10:00 ~ 16:00 (주말 및 점심시간 제외)

◎ 장소 : NIPA 서울평가장(가락동)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대한전기협회 6층

◎ 주요내용 : 데이터센터 공모사업 관련 세부사항 문의 및 상담

□ 담당자 문의처

[사업·과제 내용 및 인터넷 접수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테스트베드 조성 - 장비·SW개발 등 (국산화, 친환경, 해외 진출) -홍보, 인식개선 등	클라우드 산업팀	김민석 수석 김민선 수석	043-931-5788 043-931-5781	msgood@nipa.kr minsun@nipa.kr
- 비수도권인력양성 - 컨설팅 지원센터		김정하 수석	043-931-5777	jhkim1156@nipa.kr
인터넷 접수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		070-5151-8215 070-5151-8239	nxt_support@nipa.kr